

연예인 자살 보도로 돌아본 자살 사망 보도의 문제와 대안

최민재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

자살은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개인이 처한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시련이고, 그 시련을 극복하지 못한 개인의 비극을 언론은 기사화 한다. 언론이 개인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이유는 개인의 비극이 기사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공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경우 인물의 사회적 인지도 때문에 기사가치를 지니고, 공인이 아닌 일반시민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사회적 맥락 때문에 기사화를 한다.

즉,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가장의 자살이나 가장과 가족들의 동반자살¹⁾ 사건을 보도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의 자살사건을 보도한다. 또한 수능이 끝나면 성적을 비판한 수험생의 자살문제를 다루고, 우울증 관련 조사결과가 나오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보도된다. 노인문제가 부각되면 노인의 자살사건이 보도

된다. 또는 특수하게 인터넷상의 자살 동호회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부자살, 동반자살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건은 큰 이슈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이 당사자인 사건은 사회상황이나 연구결과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단신으로 기사가 끝나기 때문에 당사자 개인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는 낮다. 그렇지만 자살을 한 당사자의 심리적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반면에 공인이 당사자인 자살사건의 경우 자살사건과 관련된 보도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내러티브 형태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집요한 보도를 하게 된다. 특히 그 공인이 연예인인 경우에는 신문 및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예정보 프로그램, 스포츠지, 연예전문 인터넷 신문 등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사가 아니라, 연예인이나 리포터 등에 의

1) 가족의 동반자살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대부분 1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희생을 자살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손현균·김이영·안동현(1997). 한국의 동반자살 : 신문보도를 통해본 동반자살의 분석. 『정신건강연구』, 제16집, 181~193.

해 무분별하게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영화 배우 '이은주', '정다빈' 가수 '유니'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발생한 텔런트 '안재환', '최진실' 자살 사건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살보도의 영향력과 올바른 자살보도의 원칙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안재환', '최진실'의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살사건 보도의 영향력

언론보도가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언론학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연구테마 중 하나이다. 언론 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매스미디어 등장 초기부터, 선거와 여론형성, 미디어의 노출에 의한 폭력성 증가, 범죄와 연관성, 성적 행위나 사회적 소수집단에 대한 정서적 경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의 효과에 대한 연구 중에서 폭력성과 범죄에 대한 노출에 있어서 와텔라(Wartella)²⁾는 기존의 이론들을 토대로 세 가지 기초적 이론모델을 제시한다. 첫째는 '사회적 학습이론'으로 이는 아동들이 미디어가 제시하는 모델로부터 어떤 행동이 칭찬받고 어떤 행동이 벌 받을

것인지를 학습한다는 이론이고, 둘째는 '점화(priming) 효과이론'으로 사람들이 폭력을 봤을 때, 폭력과 관련된 생각이나 평가를 기폭시키거나 활성화시켜, 대인간의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셋째인 '각본이론(script theory)'은 상황에 반응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각본'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제어된다는 이론으로, 공격적 성향을 담은 각본의 결과로 공격적 성향을 담은 텔레비전의 폭력성은 공격적으로 기호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폭력성이나 범죄에 대한

노출이 수용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보도나 여타 콘텐츠들이 자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닌 원인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개인의 행동과 미디어의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많은 다양한 변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이다.³⁾

하지만, 자살 사건 보도와 보도효과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되는 편이며, 자살 관련 언론 보도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즉, 미디어의 광범위한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는 '모방자살(copycat suicide)'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염성이 있다는 점에서 '베르테르

**자살 관련 보도가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등
자살 사건 보도와 보도효과의
인과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

2) Wartella, E., Olivarez, A. & Jennings, N. (1998). Children and television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In U. Carlsson & C. von Feilitzen (eds.), Children and Media Violence (pp. 55~62). Göteborg : University of Göteborg.

3) McQuail, D. (2005). Mass Communication Theory (5th ed). 양승찬 · 이강형 역(2007).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 나남.

효과(the Werther effect)⁴⁾라고 부르며, 이와 관련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⁵⁾ 김연중⁶⁾의 연구에서는 자살보도가 직접적으로 자살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미국, 헝가리, 호주, 일본 등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가 자살률을 확실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때 주요변인은 미디어의 보도량과 보도기간 그리고 미디어의 지명도 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⁷⁾

또한 스택(Stack, 2000/2003)⁸⁾의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자살보도가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 작용하는 주요 변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유명인에 해당하는 연예인이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보도보다 14.3배나 더 후속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살의 실재성 여부로, 자살 모방효과는 매체나 장르의 종류에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나 허구의 내용을 전달하는 드라마의 경우도 예외 없이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허구적인 내러티브에 기반을 둔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경우 보다 언론보도에 나타난 사실기사가 자살에 미치는 효과가 4.03배 높게 나타나, 실제에 기반을 둔 언론보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셋째, 신문보도와 텔레비전보도의 비교에서는 텔레비전의 짧고 일회적인 보도 보다는 신문의 자살보도가 사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묘사가 더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반복성으로 인해 자살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⁹⁾

또한 국내 자살예방 관련 단체들의 연구결과들은 연예인의 자살보도가 일반인의 자살률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13일에 있었던 '자살보도 개선방안' 포럼에서는 국내 신문·방송의 모니터링(2006년 1월 ~ 2008년 8월) 결과 신문은 72%, 방송은 80.6%의 기사가 자살사건을 부적절하게 다루었으며, 실제 2005년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살 후 자살건수는 당초 2월 700명에서 3월 1,300명으로, 동일한 자살방법도 2월 300건에서 3월 75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히면서, 언론보도에 따른

- 4) 1774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the Sorrow of Young Werther)'이 출판되자 유럽 젊은이들의 권총을 사용한 모방자살이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는 이 소설의 판매를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자살의 전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짝트기 시작했다. 김영욱·허태균 (2005). 자살과 미디어 : 한국 일간 신문의 자살 보도. 한국자살예방협회 심포지움 발표 자료.
- 5) Philips, D. P. (1974). The influence of suggestion on suicide : Substantiv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Werther effec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40~354.
- 6) 김연중 (2005). 자살보도 권고기준과 한국 신문의 자살보도 행태 분석.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40~165.
- 7) Gould, M., Jamieson, P., & Romer, D. (2003). Media Contagion and Suicide Among the Young.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9), 1269~1284.
- 8) Stack, S. (2000). Media impacts on suicide : A quantitative review of 293 findings. *Social Science Quarterly*, 81, 957~971.
- Stack, S. (2003). Media Coverager as a Risk Factor in Suicid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 238~240.
- 9) 김연중 (2005). 앞의 글, 146쪽.
- 10) 민왕기 (2008. 11. 19). 제대로 된 자살보도가 생명 구한다. 『한국기자협회』.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¹⁰⁾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자살사건의 경우 연쇄 자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생명인 권본부에서는 1996년 1월 1일 서지원의 자살, 1월 6일 김광석의 자살, 1월 13일 이상민의 자살시도가 이어졌으며, 2004년에는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 3월 11일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4월 30일엔 박태영 전남지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고, 2007년에는 1월 21일 유니 자살, 2월에는 정다빈의 자살이 이어진 것을 예로 들면서 선정적 연예인 자살보도는 자살 홍보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하였다.¹¹⁾

다른 폭력이나 범죄의 경우와 달리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자살을 고려하려는 사람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기인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유명인에 대한 상세한 자살 보도는 자살을 실재화하는 방아쇠(triggering)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자살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으로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¹²⁾

**자살을 고려하려는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살보도가 자살을
실재화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어**

2. 자살사건 보도 시 지켜야 할 보도원칙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잠재적 자살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언론은 자살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기준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제정한 ‘언론의 자살 보도기준’¹³⁾이다. 이 보도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언론은 자살 보도에서 자살자와 그 유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요한 인물의 자살과 같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자살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

둘째, 언론은 자살자의 이름과 사진,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를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자살 등과 같이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러한 묘사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11) 조현호 (2007. 2. 12). 선정적 연예인 자살 보도, 홍보효과 조래. 『미디어오늘』.

12) Blumenthal, s., & Kupfer, D. (1986). Generalizable treatment strategies for suicidal behavior. In J. Mann & M. Stanley (Ed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487, 327~340. ; 김연중 (2005). 앞의 글, 147쪽.

13)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자살예방전문가가 권고하는 언론의 자살 보도 기준』.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경우는 예외이다.

셋째,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넷째,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해서는 곤란하다.

다섯째, 언론이 자살 현상에 대해 보도할 때에는 확실한 자료와 출처를 인용하며, 통계 수치는 주의 깊고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일반화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언론은 자살 사건의 보도 여부, 편집, 보도 방식과 보도 내용은 유일하게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하며,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및 특종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보도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먼저 자살의 전문성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자살이 유행하고 있다거나 특정 지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등의 표현을 피한다. 둘째, 헤드라인에 자살이라는 말을 쓰거나 사인이 자해라고 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살한 사람의 신분에 상관없이 헤드라인에 이름, 나이, 거주지를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세 부적인 표현도 '자살', '자살하다' 보다는 '자살로 사망하다'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히 유명인사 자살의 경우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을 피해

야 한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앓고 있었을지 모르는 정신질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특히 자살한 사람이나 자살 장면, 자살 방법에 대한 사진 등을 게재하지 말아야 한다. 1면 머릿기사로 신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넷째, 어떤 방법으로 자살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정한 장소를 묘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 다섯째, 실연, 실업, 질병 등의 고통스러운 사건들 자체가 유일한 자살의 원인은 아니다. 자살은 다수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원인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자살한 사람을 미화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한 사람의 사망 사실에 대한 애도를 강조해야 한다. 일곱째, 자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밝혀준다. 즉, 자살에 대한 기사에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정신적 충격으로 그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겪을 고통이 언급되어야 한다.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신체적 후유증(뇌 손상, 사지마비 등)을 입을 수 있음을 자세히 보도하면 자살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덟째, 자살보도 시 자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이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최신훈치법 등의 정보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¹⁴⁾ 이러한 자살과 관련된 보도지침은 해외의 보도지침과 유사하다. 미국의 굴드(Gould)교수가 미국자살예방협회에 권고한 자살보도 지침¹⁵⁾이나, 오스트리아 자살예방협회(ÖVSKK)의 언론보도 지침¹⁶⁾에서도 자살의

14) 한국자살예방협회 (2004), 앞의 글, 7~10쪽.

15) 하규섭 (2004, 6). 부추기는 것인가, 말리는 것인가?. 『신문과 방송』, 통권402호, 106~109.

16) 허태균 (2005). 자살관련 미디어보도가 후속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학적 이론들. 『사회과학논집』, 제22권 2호, 205~220.

모방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지침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자살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준칙마련과 언론과의 공유노력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3. 국내 언론의 자살 관련 보도 태도와 대안

자살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기존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영옥·허태균의 연구에서는 주요 일간지 4개사의 1,500여 건의 자살 보도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자살 보도가 자살 현상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 임무에 충실해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살 보도는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한 보도 관행이나 경제 등 사회적 상황과 자살 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 판단 등 여러 가지 ‘우연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률의 증가와 자살 현상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살 사건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자살 사건 기사를 지배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살 예방 차원에서 요구되는 자살 보도의 기준들, ‘자살의 원인을 단순화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제목에서 자살이라

는 표현을 삼가야 한다’, ‘자살 방법이나 장소 등 정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권고 사항들이 썩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 사건의 보도에서 권고되는 자살 예방을 위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안내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¹⁷⁾고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연중의 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자살보도가 특별히 뉴스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잠재적 자살 가능자에 대한 배려도 찾기 어렵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¹⁸⁾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자살 보도 준칙 등을 기준으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텔런트 ‘안재환’과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나친 언론보도와 증계 방송식의 보도 선정성을 들 수 있다.

지난 9월 8일 있었던 ‘안재환’의 자살사건과 지난 10월 2일 있었던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의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재환’의 사건이 있었던 지난 9월 8일의 방송 3사의 보도에서는 메인 뉴스에서 사건 발생에 대한 보도가 1건 혹은 2건 정도로 보도되었고, 중앙 일간지의 경우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3건에서 10건 정도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신문과 일간지들의 인터넷 판에서는 하루 동안 많게는 30건의 기

자살 관련 연구들은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해 자살 현상에 대한 고민 부족과 잠재적 자살 가능자에 대한 배려 부족을 지적

17) 김영옥·허태균(2005), 앞의 글, 19쪽.

18) 김연중 (2005), 앞의 글.

사를 생산한 언론사도 있었다. 신문보도에서는 일부 '모방효과'를 우려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자살장소와 방법에 대한 묘사, 동기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지나친 상세한 묘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방송보도에서는 '안재환'이 발견되었던 차량을 중심으로 한 이미지 구성이 많이 노출되었다. 또한 '최진실'의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는 방송사의 경우 메인 보도 형태로 5~8건의 보도가 이루어졌고, 각 신문사들의 경우도 대부분 1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10여 건의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또한 신문사들의 인터넷 판과, 인터넷신문에서는 각기 20~30여 건의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들의 기사들이 통합하여 제공되는 포털에서는 사진과 기사를 포함하여 1천여 건의 기사들이 당일 생산되어 제공되었다. 또한 기사의 내용 중에는 '최진실'의 자살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자료화면을 활용한 화장실 장면이 공개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에 대해 '모방효과'를 우려한 보도나, 자살이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 우울증으로 인한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자살보도 준칙'에 부합하는 기사들도 등장하였으나, 여타 기사들의 양적인 부분에 밀려 크게 부각되지 못했고, 특히 '최진실'의 기사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조차 중계방송식의 보도들이 이루어졌다.

둘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안재환', '최진실'의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에서는 뉴스보도 프로그램 이외의 연예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두 연예인의 자살사건을 매우 상세하게 다루면서 문제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특히 케이블방송인 tvN,

ETN, YTN star의 경우 진행자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 중계차를 동원하는 등 지나친 보도행위를 하자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는 보도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되었다.¹⁹⁾ 또한 지상파 방송의 경우도 연예정보 관련 프로그램에서 장례식장 장면을 중심으로 문상을 온 연예인들에 대한 화면을 중계방송식으로 보도하는 등 지나친 감성적 보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케이블 채널들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보도되면서, 스택(Stack, 2000/2003)이 제기했던 방송보도의 순간성은 사라지고, 신문의 누적성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되었다. 특히, 방송의 경우 감정의 이입이 쉬운 영상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의 기사보다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지나친 추측보도의 남발을 들 수 있다. '안재환'의 자살 사건이나 '최진실'의 자살 사건 모두 동기 부분에서 추측성 뜬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이들 내용들을 기사의 주된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며, 사건과 관련한 개인 사생활의 지나친 밀착 취재는 가족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내포한 보도행태이다. 하지만, 언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두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다루었다.

결국 이번 연예인 관련 자살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서는 그동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비판받던 언론의 선정적 보도태도를

19) 원성운 (2008. 10. 7). 최진실 보도, 왜 언론은 자살을 부추기는가. 『PD저널』.

반복하여 보여준 것이고, 또한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연예 관련 기사에서 나타나는 무분별한 극단적 선정정보도 관행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다. 100여 년 전 미국에서 황색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 극에 달했을 때, 사회적 규제 압력이 가시화 되었고, 언론은 윤리강령과 사회적 책임 모델을 도입하였다. 우리 언론들은 이러한 교

훈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자살과 같은 개인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제정한 준칙들을 언론사나 기자들의 윤리강령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관행의 개선을 위해 언론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장도 다수 필요하다 하겠다. □